

18. .

가. .

-

(Net margin, cost)
가

-

Credit standing Credit grade Market rates
가

(1)

(2016.02.29)

			1)			
	(,3)					
	(30)					
	(1)					
2)	(1)		3	3	3	
			CD + 1.607%	CD + 1.607%	CD + 1.607%	3 CD
			3	3	3	
			CD + 1.441%	CD + 1.441%	CD + 1.441%	3 CD

: 1)
2)

(2)

(2016.02.29)

		1)	2)	
	-	0.1%	0.1%	
	-	0.0%	0.5%	
	3	0.90%	1.30%	
	6	0.90%	1.30%	
	1	0.90%	1.30%	

: 1)
2)

19. 준법감시인 제도

HSBC 그룹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직성, 높은 윤리 의식, 공정한 거래, 양질의 서비스, 선량한 관리 의무를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그룹이 영업을 하는 지역에서의 관련 법, 규정, 규칙, 거래관행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CEO나 영업 책임자는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준법감시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들과 연대하여 적절한 준법감시업무 인원, 직원교육,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그룹의 준법감시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진이 준법감시 기능을 통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영업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법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이하 "당행" 이라 함) 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당행 대표 직속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정책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에 관련된 업무들이 보고 되도록 한다.
2. 준법감시인과 다음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다.
 - 신상품이나 서비스 계획
 - 회사의 구조 또는 경영조직 변경
 -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 및 준법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3. 준법감시인과 다음에 대하여 즉시 협의한다.
 - 규정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
 - 내외부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규정상의 문제점
 - 고객의 불평 또는 허가 취소된 업무가 직원에 의한 법규 위반으로 고려될 때
 - 기타 준법감시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구 받거나 그룹의 평판에 영향이 있다고 사료될 시
 - 법규위반등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앞 보고사항
4. 준법감시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준법감시업무 계획을 작성한다.
 -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 현황 및 리스크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Compliance Risk Assessment 등)
 - 준법감시 모니터링 계획
 - 준법감시업무관련 각종 지침, 메뉴얼의 적정성 (Compliance Manual, Compliance Chart 등)
 -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 교육
 - 그룹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검사 결과 검토
 - 그룹 내부 지침과 국내 법, 규정, 및 감독기관 지침의 제·개정 사항을 비즈니스에 반영
 - 신상품이나 서비스 계획 검토 등
5. 당행 대표와 경영진 및 그룹/지역의 총 준법감시책임자는 준법감시 업무계획을 확인하고 상기 준법감시계획이 이행되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며 각 업무 단위 책임자들이 준법감시인을 협조하도록 지원한다.
6.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정책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심각한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당행 대표와 경영진 또는 그룹/지역의 준법감시책임자에 보고하고, 신속히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한다.

현재 당행의 준법감시업무는 '법규준수 준법감시부 (Regulatory Compliance)' 와 '금융범죄준법감시부 (Financial Crime Compliance)' 에 각각 당행 대표 직속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야별로 준법감시정책 및 업무가 적절한 통제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 준법감시부에서는, 당행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사 및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반 경제, 시장상황, 금융관행, 신상품 제공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법규제의 취지에 부합한 적절한 통제/관리하에 충실히 법규준수를 이행하여, 건전한 윤리경영방향이 실천/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준법감시부에서는 특히 자금세탁방지, 금융제재, 부패방지 에 관한 법규준수 및 준법감시활동이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 내부통제

1) 감사의 기능과 역할(정기, 특별, 수시감사)

내부통제의 총괄적인 부서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감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 특별, 수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부의 감사는 사업단위 또는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감사 시 파악된 취약점 및 업무개선사항 등을 해당업무의 최고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잠재 (Potential) 리스크 및 최근 발생(Emerging) 리스크에 대한 현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하기 위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합니다.

2) 내부감사부서 검사방침

내부 감사부는 은행의 직원 및 부서가 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점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노출된 위험이나 운영상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는 그 판단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 부서와 협력하여 은행의 전반적인 통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검사빈도

사업단위 업무 부문별, 부서별 리스크 크기에 따라 결정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1~3년 주기로 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부문별 이슈 사항 발생 및 대외기관의 점검 의뢰 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업무의 최고책임자 및 부서장에게 통지하여 개선사항을 완결하도록 하고 해당업무의 최고책임자 또는 부서장은 개선사항을 이행한 후 확인서를 보내어 개선사항의 완비를 알립니다.

21. 금융사고 발생현황

가. 사고금액 기준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사고금액)기준	2015년도 4분기	2015년도 3분기	2015년도 2분기	2015년도 1분기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해당사항없음		
100억원이상 ~				
총 계				

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금융사고의 사고금액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 또는 피해예상금액을 의미
 (회수금액 또는 회수예상금액은 감안하지 않음)

나. 사고유형 기준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사고유형 기준		2015년도 4분기	2015년도 3분기	2015년도 2분기	2015년도 1분기
금전사고	횡령				
	유용				
	배임				
	사기		해당사항없음		
	도난피탈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실명제위반				
	사적금전대차				
	기타				
총 계					

주) 금융사고 세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 기타’로 분류

2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사실

위반구분	발생월	비율	향후준수계획	약정서체결내용	이행여부	비고
			해당사항없음			

23.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

해당사항없음

24. 민원현황 및 민원발생평가등급

※ 동 민원건수는 중복, 반복민원, 단순 질의성민원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 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당분기 : 2015년 4분기 (2015.10.1~2015.12.31)
- 직전분기 : 2015년 3분기 (2015.7.1~2015.9.30)

가. 민원건수

- 신용카드 비점영은행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2015년 4분기	증감율 (%)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증감율 (%)	2015년 3분기	
자체민원 ¹⁾	9	800%	1	9.75	827%	1.05	
대외민원 ²⁾	0	0%	0	0.00	0%	0.00	
합계	9	800%	1	9.75	827%	1.05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금융회사로 이첩되었거나 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민원(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이첩 또는 사실 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 신용카드 점영은행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2015년 4분기	증감율 (%)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증감율 (%)	2015년 3분기	
자체 민원 ¹⁾	전 체						
	신용카드제외 ²⁾						
대외 민원 ³⁾	전 체			해당사항없음			
	신용카드제외 ²⁾						
합계	전 체						
	신용카드제외 ²⁾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민원 건수 : 전체 민원 건수 - 신용카드 민원 건수

환산건수 : $\frac{(\text{전체민원 건수} - \text{신용카드민원건수}) \times 100,000}{(\text{전체고객수} - \text{신용카드거래만 하는 고객수})}$

주3)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금융회사로 이첩되었거나 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민원(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이첩 또는 사실 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나. 유형별 민원건수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 (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2015년 4분기	증감율 (%)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증감율 (%)	2015년 3분기	
유 형	수 신	3	100%	0	3.25	100%	0.00	
	여 신	6	100%	0	6.50	100%	0.00	
	신용카드 ^{주1)}	0	-	0	0.00	-	0.00	
	외환업무	0	-	0	0.00	-	0.00	
	기 타 ^{주2)}	0	-100%	1	0.00	-100%	1.05	
합계		9	800%	1	9.75	827%	1.05	

주1) 신용카드 겸영은행인 경우 비고에 해당사항을 표시

주2)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 관련, 홈페이지오류, 직원응대 등

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등급

연도	2015년	2014년	2013년
평가등급*	해당사항없음		

* 매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 처리결과 및 회사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1등급(우수)~5등급(불량)] 하며, 당해 금융회사의 영업규모(총자산, 고객수 등) 및 민원발생 건수의 각 업권내 비중이 1% 이내인 경우 등급을 산정하지 않음

25. 수시공시 사항

해당사항없음

26.

1)

(Risk Management Committee) 가 가
(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 EXCO (Executive Committee)

Green/Amber/Red 가 / 가,
가
1

2)

-
-
-
-

가.

23 () (가) 2
1 가 (/ /)
1

(RM)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가
, RM

(Loan Management Unit) (Ownership) (),

CRR (Credit Review and Risk Identification) (Group Credit Audit)

3)

가, ,가, 가

Point)

PVBP (Present Value of a Basis

가 가 가

4)

가

5)

ALCO(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

6)

a.

(Regulatory Engagement)
Management Committee)

(Compliance Chart)

가(Compliance Risk Assement)

(Risk

&

b.

II

가

가

c.

가

.OA

2

3

OA

1

1.

(" ")

2.

(1) " " , , 가

(2) " " 가

(3) " 「 」 < 3-2 > "

2

(4) " "

3.

4.

(1) - 가)
)

(2) - 가)
) ()

(3) (Financial Controller) -가)

(4) -가)
)

(5) - 가)

2

5.

(trading book)

(banking book)

, " " 2 3

(1) 가, , , 가

(2)

(3) (market making)

(4) " 1039 : "

(5)

(6)

6.

- (1) 『 』
- (2)
- (3) (: CD, RP)

7.

- (1) , (CD), , (CP) 가
- (2) 가
- (3)
- (4) 1)2)3)
- (5)
- (6) 5)

8.

- (1) 가 가가 가
- (2) 가 가
- (3)
- (4) 가 가 가

9.

- (1) 가. 가 가 가
- . 가 가 가
- . , , 가
- (2) 가." 1039 : " 가

10.

- (1)
 - (2)
 - (3)
- 3 가 가

11.

- 가 가
- 가 가 가
- (1)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Benchmark price)
 가 (Indication price)

(2) : 가

(3) : 가, 가 가가 가

(4)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5) < 4> < 5> “ 가 가 “ ”,
 “ 1039 : ”

4

12.

- (1) (aggregation) .
- (2) (aggregation) .

13.

- (1) (Financial Controller)
- (2) (Financial Controller)
- (Financial Controller)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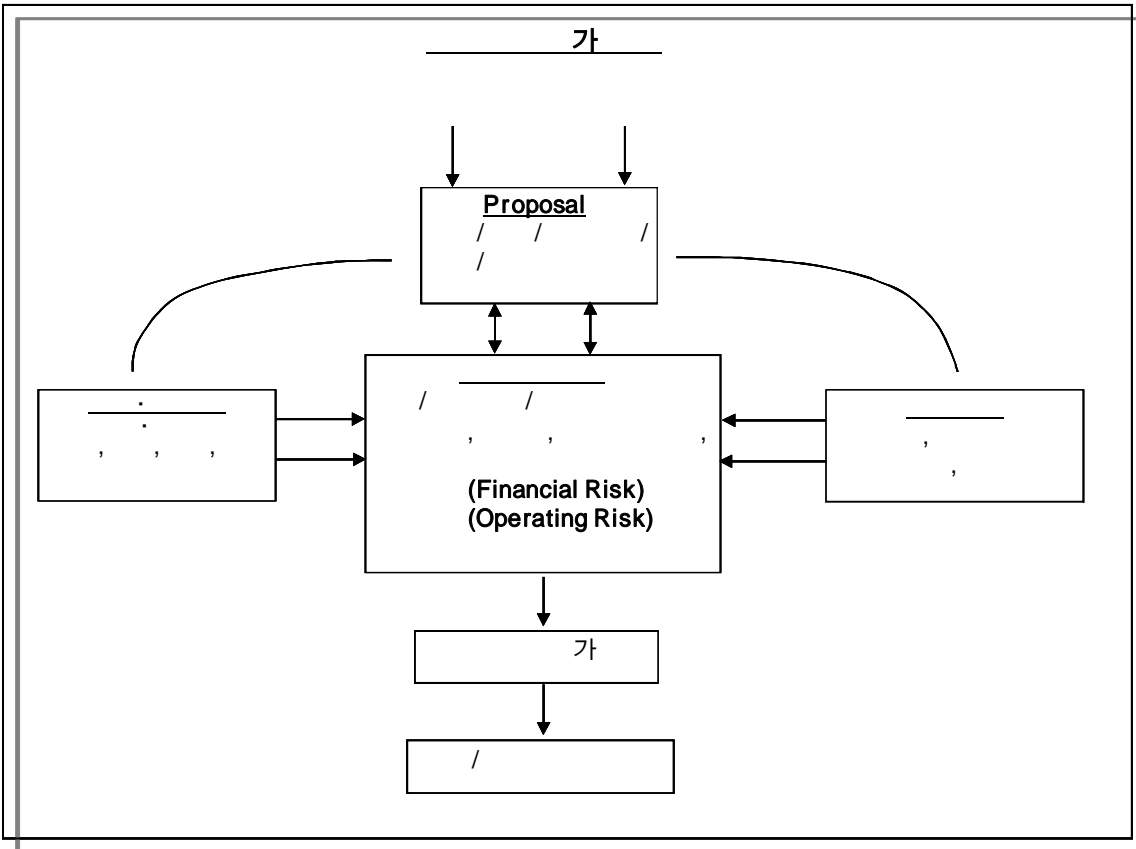
- (1) 1
- (2)
- (3)
- 가.

15.

1

16.

(HSBC)



(, ,)

:

/

(,)

()

27. 상품 이용시 유의사항

1. 예금 상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예금 거래는 예금 가입시 신고한 인감 혹은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거래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과 통장 (무통장 상품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 거래시 영업점 창구에 비치된 예금거래 기본 약관 및 거래하시는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특히 추가지수 연동 예금과 같이 파생 상품에 연계되어 시장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 금리 상품의 경우 반드시 상품의 내용과 약정 사항을 확인 하시고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거래 인감을 분실하셨을 때는 즉시 서울지점(02-2004-0123) 또는 HSBC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1770)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2. 투자 상품

- 이 상품은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뮤추얼 펀드를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 및 운영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및 뮤추얼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품에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받아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해지(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환매)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매금 지급일 및 기준가 적용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국내외의 공휴일 혹은 증시휴장 등으로 인해 환매금 지급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내에 환매하시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으니 상품 가입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달러, 일본엔, 유로화 등을 기준통화로 하는 해외펀드에 투자하실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상품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체결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해당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을 열람/교부받아 대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 당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액은 신청금액에 불구하고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으신 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28. 수수료

가. [] ()

(1)

(2) ATM

(3)

(:)

(, ARS)		

* 가 1 , 5 가 ,

(4)

(:)

e- Plus		2,000
e- Plus		2,000
		2,000

* 1588-1770

*

* 2015 12 3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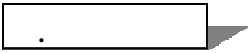
(:)

		30,000 ()
		30,000 ()
		× ()
		3,000 (가 1,000)
	()	
		×

*

*

2015 12 31



(:)

Outward	(5)	30,000
	(5 ~1)	20,000
	(1)	10,000
		10,000
Inward		10,000 or USD 10
	()	20,000
	HSBC	20,000
*		2.0%
		3.0%
		0.1% (USD 10)
	Inward	USD 6.5
		USD 30 +

* 가 , 가 (USD) 가

•

(:)

*		2,000 (가 500)
/		2,000
		2,000
		15,000
	()	1,000
		50
		300
		5,000 ()
		1,000 ()
	-	
	1	2,000
-	1	3,000
	1	4,000

*

가 .

29. 주요용어해설

1) 연결대상자회사

은행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봅니다.

-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비연결대상자회사

은행의 지분율이 15% 초과하면서 연결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를 비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3) 보통주배당률

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보통주배당누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text{보통주배당률} = \frac{\text{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text{당해연도말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 \times 100$$

4) 보통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1주당 배당누계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text{보통주 주당배당액} = \frac{\text{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text{당해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5)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누계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text{배당성향} = \frac{\text{당해연도 결산후 배당누계액}}{\text{당해연도 세후 당기순이익}} \times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은행계정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6) 총당금적립전이익

총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text{총당금적립전이익} = \text{당기순이익} + \text{법인세비용} - \text{제충당금환입액} + \text{제충당금전입액} (\text{대손상각비, 지급보충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충당금전입액, 대손보전기금}) + \text{지도사업전출} - \text{대손보전기금, 지도사업전출은 농·수협 해당}$$

7) 특별유보금과 채권평가충당금

(1) 특별유보금 :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증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2) 채권평가충당금 : 채권평가충당금은 불특정금전신탁을 대출금 등으로 운용할 때에 대출금 등의 대손에 의한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8) 단기손익인식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단기손익인식지정 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최초 취득시점에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손익인식지정 증권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경우
- (2)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할 경우
- (3) 복합계약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리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9)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10)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유가증권이거나 당기손익인식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11)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연체여신,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여신, 채무상환능력 약화여신, 채권제조정여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총여신 : 대출금(원화, 외화, 역외외화, 신탁계정 대출금 포함) + 내국수입유산스
 + 지급보증대지급금 + 확정지급보증 + 신용카드채권 + 직불카드채권 + 여신성가지급금
 + 매입의환(내국신용자어음매입 및 관련 미수금 포함) + 사모사채 + 기업어음
 +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 금융리스채권 + 금융리스선급금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분류단계	정 의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 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약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 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무수익 여신산정기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

대상		산 정 기 준
연체여신		원리금이 3월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환 여신
이 자 미 계 상 여 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최종부도업체, 파산·정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법정관리· 화의절차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환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수의문거래처)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환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불 원가,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여신) ② 3월이상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신 ③ 원리금의 상황이 유예되거나 기준금리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황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12) 고정이하분류여신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여신으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 (1) 고 정: 총여신중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액
- (2) 회수의문: 총여신중 손실발생이 예상되거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3) 추정손실: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은행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13) 파생상품거래

통화,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 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 1)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 3)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입니다.
- 5) 잠재적신용익스포저는 리스크요인별, 잔존만기별로 신용환산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14)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 금융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 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외은지점의 경우 운영리스크 제외)에 따라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8% 이상입니다.

15)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도 1개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토록 하는 단기 유동성비율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비율은 100% 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60% 이상)입니다. 다만, 동 경영지도비율은 은행별 성격 및 국제기준의 단계적 이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표와 같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시행됩니다.

구 분	은 행	외국은행지점	산업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수협중앙회
2015년	80%	20%	60%
2016년	85%	30%	70%
2017년	90%	40%	80%
2018년	95%	50%	90%

16) 단순자기자본비율

은행이 자산규모(총익스포저) 대비 자기자본(기본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자본규제의 보완적인 규제 수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레버리지비율로서 기본자본(분자)을 총익스포저(분모)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7)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업무용유형자산 비율은 은행이 점포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투자액, 임차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동 투자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18)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자금부문의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화대출금수익률에서 원화예수금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대출운용이 적정수익력 및 저비용성자금(Low Cost Funding)조달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9) 명목순이자마진

(☞ 업무보고서 순이자마진 B2510참조)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과의 차이를 말하며 매결산기말에 금융감독원앞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상의 순이자마진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기재한다.

○ 명목순이자마진(NIM)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이자수익자산

20) 신탁부문의익

은행의 수익발생 원천에서 신탁부문의익은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신탁부문의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보전금

21) 순외환익스포저

순외환익스포저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투기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설정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순외환익스포저의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50% 이내입니다.

22) 지급보증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확정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된 수입관계지급보증, 해외현지차입 및 입찰 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 행위중 일정한 이행조건이 구비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2) 미확정지급보증 : 화물선취 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수입관계 지급보증 등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의뢰인의 주채무 이행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23) 대손준비금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4)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이며, Moody's, S&P, Fitch 를 국제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기간에 따라 장/단기, 통화에 따라 자국통화표시/외화표시, 종류에 따라 채권(부채)/예치/발행 관련 신용등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단기에서 단기등급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위험을 나타내며, 국내은행의 경우 개별은행의 사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평가사가 1~2개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3대 신용평가사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대부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신용평가사별 신용등급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Moody's	S&P	Fitch
장기	투자적격등급	Aaa ~ Baa3 (1등급)	AAA ~ BBB- (10등급)	AAA ~ BBB- (10등급)
	투기등급	Ba1 ~ C (1등급)	BB+ ~ SD 및 D (12등급)	BB+ ~ D (14등급)
단기	투자적격등급	P-1 ~ P-3 (중급)	A-1+ ~ A-3 (4등급)	F1+ ~ F3 (4등급)
	투기등급	NP(1등급)	B ~ SD 및 D (6등급)	B ~ D (3등급)

○ 장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Aaa	AAA	AAA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Aa1	AA+	AA+	Aaa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High Quality)	
	Aa2	AA	AA		
	Aa3	AA-	AA-		
	A1	A+	A+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Upper-Medium Grade)	
	A2	A	A		
	A3	A-	A-		
	Baa1	BBB+	BBB+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Medium Grade)	
	Baa2	BBB	BBB		
	Baa3	BBB-	BBB-		
	투기 등급	Ba1	BB+	BB+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 (Partially Speculative)
		Ba2	BB	BB	
Ba3		BB-	BB-		
B1		B+	B+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Speculative)	
B2		B	B		
B3		B-	B-		
Caa1		CCC+	CCC+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 (Maybe in Default)	
Caa2		CCC	CCC		
Caa3		CCC-	CCC-		
Ca		CC	CC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C	C	C	최저등급(Extremely Poor)		
	SD 및 D	DDD DD 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Bankruptcy)		

○ 단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P-1 (Prime-1)	A-1+	F1+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P-2 (Prime-2)	A-2	F2	
	P-3 (Prime-3)	A-3	F3	
투기 등급	NP (Not Prime)	B	B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B-1		
		B-2		
		B-3		
		C	C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SD 및 D	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25) 신용 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26) 운영 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27) 시장리스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28) 금리리스크

금리가 금융기관의 금리민감 자산, 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서 금리 EaR (Earning at Risk)과 금리 VaR(Value at Risk) 등으로 측정됩니다.

29) 증권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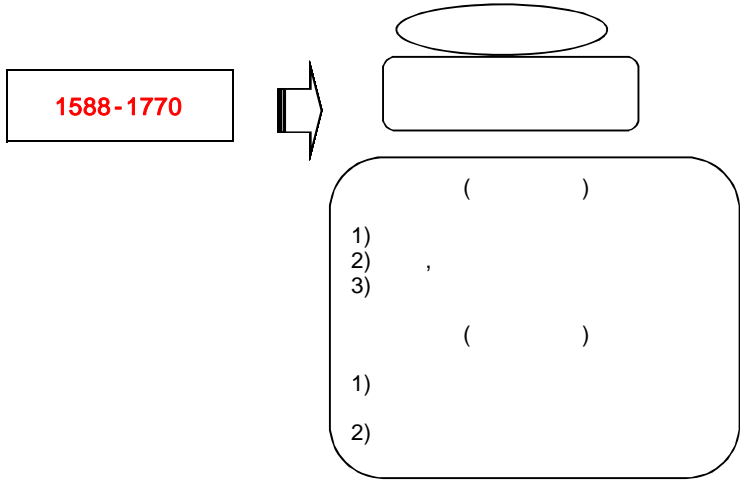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 운용사 또는 투자신탁 회사가 전문지식이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분해 주는 투자방법중의 하나입니다.

- 수익증권이란 : 증권투자 신탁계약에 따라 원본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가 표시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뮤추얼펀드란 :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한 후 이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 회사에 운용을 맡겨 그 이익금을 투자자(즉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하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RBWM

* 1 :1588-1770 (82-2-6955-1153)
* 2

(1588-1770)



* 1 1 (1 5)

				/
			09:00~17:30	가
			09:00~17:30	가
			24	365
			09:00~17:30	가